

보증서대출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상품과의 특징

- **기업대출**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생계유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계대출 상품과 구분됩니다.
- 은행은 대출 가용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의 신용 및 각종 담보에 기반하여 대출을 제공하며, 부동산 이외에도 동산·채권 등다양한 범위의 담보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은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로 구분됩니다.
 - (운전자금대출) 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시설자금대출) 기업설비의 취득·신설·증설·복구 등 일체의 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 대출 만기 전 자금이 생길 때마다 대출금을 갚고 싶은 경우, 모바일앱에서 휴일에 관계없이 원하는 금액만큼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원금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더라도 매월 원리금은 납부일에 별도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금 중도상환 시, 상환할 금액에 대해 (0)%의 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확인
- 대출 만기 전 '폐업'을 하시는 경우 **기한의 이익(약정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7.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 확인
- 기업자금대출은 자금용도의 목적범위 내로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u>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당행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u> 대출자금의 유용 시 해당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10. 기타 유의사항], "여신거래약정서 제 16 조" 확인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원리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2 억원 1 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금리(예시: 8%)가 적용되어 월 연체이자 80 만원(1.2 억원 X 8% X 1/12) 발생
- →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7.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확인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민원·상담은 고객센터(1599-3333),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akaobank.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상품명: 적용(예상)금리 : 금리적용방식:□ 변동 □ 고 중도상환해약금 부과 여부:□			원 급 후 개월 가능 여부 : □ 대상 □ 비다	付상			
✓ 대출계약 체결 시 고객님께서 !	✓ 대출계약 체결 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대출금액과 이자, 수수료 등]을 합산한 총액이며,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정됩니다.						
2. 수수료 등 비용부터	람						
	지역용되는 수수료 등 비용의) 원 또는 보증금액의 (상품을 보증하는 외부기관에 납부하) %	E시됩니다.				
	·대출금액 × ()% × (대·)개월(기한연장 포함)까						
•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 합하여 3 년이 경과한 후 해지	 ※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 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 (예시) 중도상환해약금률 1%, 대출금액 1 억원을 대출기간 3 년(1,095 일/윤년포함 1,096 일)으로 약정 후,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일자가 180 일인 경우 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은? 						
	1 억원 × 1% × 180 /	1,095 (윤년포함 1,096) = 164,383	원 (윤년포함 164,233 원)				
□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 근저당권 감액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보통 건당 50,000 원 •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 -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당행 근저당권 말소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 원 - 권리보험료 : () 원 ※대출금액, 자금용도에 따라 차등 -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수수료 : () 원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 원 →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	□ 인지세 : () 원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 천만원 이하	5 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	1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0 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 만원	15 만원	35 만원			

			3 2 2 2 4 1 1 1 2 1 1	1 12 14 10 12 11	10 12 14		
			비과세	7 만원	15 만원	35 만원	
		고객부담	-	3 만 5 천원	7 만 5 천원	17 만 5 천원	
		회사부담	-	3 만 5 천원	7 만 5 천원	17 만 5 천원	
□ 기타수수료 : 항목(□ 기타 비용 : 항목(료 : 항목() 금액()%,원			
		ያ : 항목() 금액()%,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4 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대출계약 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 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를 위해서는 **모바일앱**으로 **은행에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u>대출금</u>과 이에 대한 <u>이자</u>,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 3 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 개월 내에 2 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 여부 : □ 대상 □ 비대상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 승등) 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 30 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협약대출·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 등)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 17 조제 3 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 18 조제 2 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 19 조제 1 항·제 3 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 20 조제 1 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 21 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u>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u>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라. 자료열람요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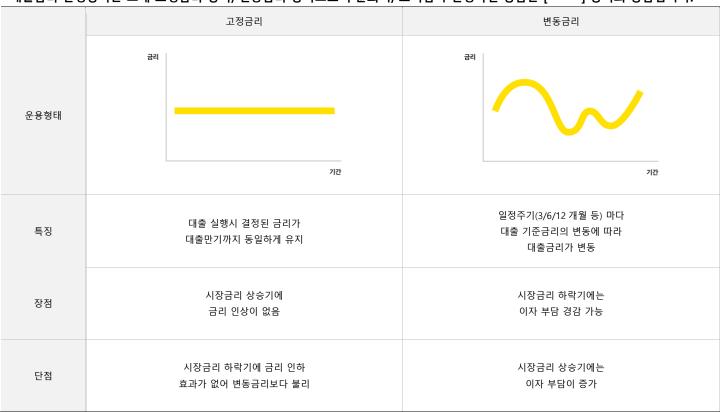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4.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요인

■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방식, 변동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 고객님이 신청하신 상품은 [] 방식의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마진(목표마진율)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 대출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대출의 대출금리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 은행은 COFIX, 금융채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대출 기준금리 외에 나머지 부분으로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
 - 조달리스크프리미엄 :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
 - 유동성프리미엄 :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등
 - 예상손실율 :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 등
 - 위험자본비용율 :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기회비용 등



- 업무원가율 : 대출취급에 따른 은행의 인건비·전산처리비용 등
- 법적비용 :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및 준조세성 부담금
- 목표마진율 : 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
- 가감조정금리 : 상품자동감면금리, 시스템감면금리 등

※ 변동금리 예시

- 금융채연동금리 : KIS 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 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3 개월, 6 개월, 1 년, 5 년)」종가의 단순평균값에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 COFIX 연동금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매 6 개월마다 변경됩니다.
- 수신금리 연동금리 : 예적금담보대출의 담보 예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예적금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이에 연동되어 변경됩니다.
- 국고채 연동금리: KIS 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 「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국고채권 유통수익률(5 년)」의 단순평균값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변경됩니다.
-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신용등급 변동,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자금조달금리, 원가요소, 마진 및 가감조정금리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상환방법별 특징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상환방법은 []입니다.
- 동일한 금리·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 원리금 조회 방법 : 대출계좌 > 관리(우측 상단) > 원리금 조회 > 다음 원리금 확인 (참고 : 월별 상환내용 보기는 우측 하단)



■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1 억원을 대출기간 5 년으로 하여 연 5%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워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상환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 년	1,810 만원	500 만원	2,310 만원	8,910 만원
2 년	1,900 만원	410 만원	2,310 만원	6,290 만원
3 년	1,995 만원	315 만원	2,310 만원	4,295 만원
4 년	2,095 만원	215 만원	2,310 만원	2,200 만원
5 년	2,200 만원	110 만원	2,310 만원	0 원
합계	1 억원	1,550 만원	11,550 만원	-

○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상환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 년	2,000 만원	500 만원	2,500 만원	8,000 만원
2 년	2,000 만원	400 만원	2,400 만원	6,000 만원
3 년	2,000 만원	300 만원	2,300 만원	4,000 만원
4 년	2,000 만원	200 만원	2,200 만원	2,000 만원
5 년	2,000 만원	100 만원	2,100 만원	0 원
합계	1 억원	1,500 만원	11,500 만원	-

○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상환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 년	0 원	500 만원	500 만원	1 억원
2 년	0 원	500 만원	500 만원	1 억원
3 년	0 원	500 만원	500 만원	1 억원
4 년	0 원	500 만원	500 만원	1 억원
5 년	1 억원	500 만원	10,500 만원	0 원
합계	1 억원	2,500 만원	12,500 만원	-

■ 상환방법 등에 따른 유의사항

-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기한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자(원리금) 납입방법

- 이자 납입일(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을 정하여 매월 이자(원리금)를 납입하며, 대출계약 시 지정한 자동이체계좌에 납입일까지 이자(원리금)를 입금하거나, 모바일앱을 통해 휴일에 상관없이 직접 상환거래가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 대출 : 이자 납입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납입하며, 대출한도가 설정된 입출금계좌에 납입일까지 이자 를 입금
-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경우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에 대출금액에 합산
- ☞ '매일의 잔액'의 의미 = 마감잔액 + (하루 중 최고잔액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은 매일의 잔액을 산정하기 위해 은행이 정한 시작 및 마감 시간의 대출잔액을 말함
-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이자 납입일(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 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6.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담보의 대상	담보권 설정의 절차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한 후 그 경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7.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담

- 연체금리은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금리 : **연 3**%
 - 연체금리는 최고 연 15%로 합니다. 단, 대출금리가 연 15%보다 높을 때에는 대출금리에 연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상품에 따라 연체금리가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③「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 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④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예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 중 발췌)
- 1.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2.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 1 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 3.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 4.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5.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6.채무자의 과점주주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제 1 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⑤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 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 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대출 원리금을 5 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신용카드 정지 등) 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점평점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 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평점이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을 3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 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 년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약정한 대출기한이 도래하면 만기일까지 전액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만기일시상환방식(마이너스 통장대출 포함)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만기 도래 전 모바일앱을 통한 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장 신청 시, 상품에 따라 연소득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하락,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감액)**해야 하거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대출 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9.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기업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금지
- **기업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이란 대출금을 주택구임자금 등 <u>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u>하거나, <u>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u>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금용도 외 유용 시 **해당 금액은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의 거래 상대방
- 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개인이자 자연인으로서 여신거래를 하며, 법인 등의 경우 대표이사가 여신거래를 하나,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대표자격이 확인된 대표이사에 한합니다.
- 기업대출의 유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 여신거래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은 여신거래 유지 및 갱신 등을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 및 매출관련 자료 등을 매년 1회 이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의 지속가능 조건
- 기업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 폐업 등 존속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여신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인

- 법인에 대한 기업여신 등의 연대보증 입보는 가능하나, 실질경영자나 관계기업이 아닌 제 3 자의 연대입보는 불가합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한 사유)]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 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란?
-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 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만 부여됩니다.
-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대출심사 거절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체크카드 연계 계좌 마이너스 통장대출 약정 관련 안내사항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공여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결제 시 결제계좌에서 이용금액이 바로 출금처리 됩니다.
-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이용할 경우 예금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대출로 결제금액이 지급되고 대출사용에 따른 이자가 발생됩니다.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대상 상품 여부 : □ 대상 □ 비대상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유선 상담을 통해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변경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 서울보증보험 신용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 또는 담보대출 등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유선상담을 통해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접수 후 은행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미납된 이자 및 원금에 대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채무조정요청권

- 채무조정요청권 대상 상품 여부 : □ 대상 □ 비대상
- 채무자는 실직, 폐업,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곤란한 경우,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해 채무자에게 곧 통보합니다.
 - ☞ 서울보증보험 신용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 또는 담보대출 등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 채무조정요청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은 수식회사 카카오맹크와 내물거래들 암에 있어 위에서 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내물거래의 수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서명)

본 상품은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캠프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99-3333),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akaobank.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D수익률 표준설명서

• CD 수익률 표준설명서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CD 수익률 사용기관이 작성하여 일반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합니다)와 CD 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CD 수익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중요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참고자료이며, 그 작성, 설명 및 고지 등과 관련한 책임·의무는 해당 CD 수익률 사용기관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CD 수익률의 내용 및 용도

가. CD 수익률의 정의

- CD 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 일(만기가 80 일 이상 100 일 이 내면 만기 91 일로 본다)인 CD 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CD 수익률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로 지정('21.3.27)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 년 10 월 2 일부터입니다.

나. CD 수익률의 용도

- CD 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CD 수익률 적용 계약의 범위
 - ☞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상품, 신용카드 발급, 시설대여, 할부금융, 어음 할인·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자금예탁, 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근거: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12① 및 감독규정 §13)

2.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가. 기초수익률 및 제출기관의 정의

- 기초수익률이란 금융거래지표법 제 2 조제 2 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 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 8 조제 2 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 익률을 말합니다.
- 제출기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조제 5 항제 7 호에 따라 CD 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 개사를 말합니다.

나. 적격거래 선정기준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 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여야 합니다.
- ① AAA 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 일 이상 165 일 이내인 CD 거래 일 것
- ② 건별 거래량이 100 억원 이상일 것

3.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가.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 제출기관은 **다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 ① Level 1 (표준만기* 3 개월 발행물 금리)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 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Level 1 산출 불가시)

②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2·4·5 개월), 경과물(2·3·4·5 개월) 거래의 수익률을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산출

♥ (Level 2 산출 불가시)

- ③ Level 3 (전문가적 판단):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
 - * 표준만기: 2 개월물(45~79 일), 3 개월물(80~100 일), 4 개월물(101~135 일), 5 개월물(136~165 일)

나. CD 수익률의 산출 절차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 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 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담당기관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16 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16 시 15 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등(이하 '오류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 요구
CD 수익률 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 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 수익률 산출 및 16 시 30 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다. CD 수익률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 CD 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CD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 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수 있는 점
 -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 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4. CD 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① (왜곡·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 ②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 수익률 산출
 -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 수익률의「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 16 조제 2 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④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①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 ②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 수익률 산출
 -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 수익률의「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 16 조제 2 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④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 후에도 오류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 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 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 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미 공시한 CD 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 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 퍼센트 포인트(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 공시한 당일의 17 시 30 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가.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 CD 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거래
-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 CD 수익률 산출 방법 및 절차
-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및 절차
-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절차
- CD 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및 CD 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등

나.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 CD 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CD 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 ○「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 16 조제 2 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등이 발견되어도 수정 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6.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가, 비상사태의 범위

- **협회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 14 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 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 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어 CD 수익률의 타당성 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CD 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나.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 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로 CD 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 수익률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 차 심의·의결**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산출업무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 차 심의·의결
-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 산출업무의 他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 CD 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대체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D 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 개월 금융채 유통수익률(AAA 등급)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최종고시된			
± 스프레드	유통수익률 평균값을 적용			

- CD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 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한다.



- CD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 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
 - 본인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CD 수익률 설명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	(서명)

CD 수익률 사용기관은 상기 $1\sim7$ 의 기재사항과 함께 CD 수익률 산출방법 및 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 사항을 해당 기관의 CD 수익률 설명서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및 CD 수익률 설명서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 이력도 기재 또는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상품은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캠프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99-3333),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akaobank.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